

대구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나30994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나3099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소2550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준혁, 구인호, 박경로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요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휘덕, 조성윤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1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소2550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23. 4.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파레트 수리 및 판매업을 하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파레트 탈착기기 제작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파레트 탈착기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되, 그 대금은 1,4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 B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4.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무렵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다1).

라. 한편 원고는 2018. 4. 23.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주식회사 F(대표자 G, 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며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3. 3. 8.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는 원고에게 다시 납품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를 하자있는 상태로 납품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2018. 말경에야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수리 및 납품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F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F 또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기계에 원고가 주자하는 것과 같은 하자는 없었고, 피고들은 2018. 4.경 납품 및 수리를 완료하였다. 오히려 수리를 의뢰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와 F 사이의 금전관계는 피고들과 무관하다.

3.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여야 할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2018. 8. 24.부터 2020. 5.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및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2018. 8. 24.경 피고 B에게 몇 달째 수리를 안 되고 있다며 수리를 요구하자 피고 B은 "다음 주까지 수리를 해주겠다.", "이번 주에 수리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수리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원고가 "몇 달째 안 해주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피고 B은 "그렇죠"라고 대답하였으며, 원고에게 최초 납품이 몇 개월 지체된 사정을 감안하여 잔금 400만 원은 다시 협의하자고 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제안["(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해주고 금액 부분에서 다시 추라이 보시죠.", "돈을 안 받을 테니까 한 2주 만 기다려 주이소"]하기도 하였다. ② 이후 2018. 8. 27.경 원고가 왜 연락이 없냐고 물어보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피고들은 수리 및 납품을 하지 않았고, ③ 2018. 10. 20.경 수리가 다 되었는지 묻는 원고에게 피고 B은 "다음 주 까지는 될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수리를 하지 않았으며, ④ 원고가 2018. 11. 8. 다시 진행 여부를 묻자 피고 B은 "요번 주 토요일날 납품 드립니다 사장님", "예. 확실해요."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지 않았다. ⑤ 또한 2018. 11. 22.경에는 원고가 언제쯤 (이 사건 기계가)들어오냐고 묻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전화드릴게요."라고 답을 하였으나, 납품을 하지 않았고, ⑥ 2018. 12. 14. 원고의 전화에 대하여 바로 전화를 준다고 대답하였으나 그 후에도 납품이 되지 않았다. ⑦ 2020. 5. 28.에는 원고가 "수리한다고 갖고 간지 1년 반이 다 됐는거 아시죠?"라고 묻자, 피고 B은 "아니, 몰라예."라고 대답하였다가 원고가 추궁하자 다시 G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한 후, 피고들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사실은 G에게 수리를 맡긴 것인데 F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결국 월요일에는 이 사건 기계를 찾아서 납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납품하지 않고 있다.

2)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려면 그 이행행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8. 4.경 이 사건 기계를

한 차례 납품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수리요청에 동의하여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간 후에도(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들은 2018. 10.경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문의에 그때그때 상황을 넘기기 위한 대답만을 하였을 뿐 최초 납품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3. 3. 현재까지 납품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8. 4.경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한 행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불완전이행 내지 이행지체로 볼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를 최소 2018. 8. 24.부터 2020. 5.까지 수차례 하여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을 하지 않거나 그 잔금을 청구하고 있지도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의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2020. 9. 11.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상회복의무

피고들은 연대하여(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들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E 사업주 명의는 피고 C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협의하여 실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의 수리 및 납품에 관한 의사소통은 모두 피고 B이 수행한 점, 피고 B이 실제 수리업자 G와 거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7.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F에 지급한 200만 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만 원을 F에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와 F 사이에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할 뿐(원고는 F에 수리용역을 맡겼으나 F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김정섭, 판사 박소민

1)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요청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주장, 증거가 없다.